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4일,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 의원)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장애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고령 중도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①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7,754,000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2,069,900원[1등급]) 간 급여량 차이가 크다는 점, ②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같은 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간 목적 및 지원대상, 재원의 차이, 추가적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견임. 참고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노인 관련 지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전 서비스 진입 시에만 장애인 관련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함.

스웨덴은 65세 미만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며, 노화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호주의 경우는 65세 미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속 지원하되,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65세 도달 시점부터는 장애발생 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인정하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다소 감소하는 연령인 점을 고려하여 그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